

의안
번호

45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5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7.

2. 제안이유

- 성북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안 제8조제5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

나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2. 10. 06. ~ 2022. 10. 26.

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지역의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반 마련을 위하여 설치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각 동의 협의체에 두는 자문위원의 수를 기존 '5명 이하' 에서 '필요한 경우로 자문위원의 수의 상한선을 폐지한 것으로, 이는 동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문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동협의체의 활성화와 효과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취지임.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7항1) 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음.

-
- 1) **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되,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-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 <개정 2017. 9. 21.>